

# 2021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

##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

구 분	선 발 기 준				
선발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대 상)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(고등학생 혹은 대학생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선원가족의 범위: 배우자, 자녀, 부모</li> <li>단, 선원이 손자·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(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)</li> </ul> </li> <li>○ (승무경력)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</li> <li>○ (성적기준) 대 학 생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.5이상(단 1회에 한하여 2.0 이상 가능) 고등학생 : 성적무관</li> </ul>				
소득기준	구 분	기준금액			
	1학기	월 4,737,000원 미만(2019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 ※ 단,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%씩 가산 적용			
	2학기	추후공지(2020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적용 예정)			
신청기간	구 분	접 수	선발시기	선발횟수	
	1학기	3월 1일 ~ 4월 9일	5월	당해 연도 1학생당 1회 선발	
	2학기	9월 1일 ~ 10월 8일	11월		
선발인원 및 금액	구 분	지급금액	1학기	2학기	비 고
	고등학생	120만원	6명	4명	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	대 학 생	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	130명	85명	
선 발 제외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학비(수업료)를 면제 받는 경우</li> <li>○ 고등학생 :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</li> <li>○ 대 학 생 :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</li> <li>○ 선원법(제3조) 적용 제외 선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</li> <li>- 호수, 강 또는 항내(港內)만을 항행하는 선박(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)</li> <li>-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</li> <li>-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(舢舨)(다만,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)</li> </ul> </li> <li>○ 선박소유자</li> <li>○ 관공선,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(용역)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				
유의사항	○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(장학금 반환)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

구 분	선 발 기 준
2021년 1학기 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정양식(우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 각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장학생선발신청서(학생용)</li> <li>② 장학생선발신청서(사업장확인용)</li> <li>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</li> <li>④ 서약서</li> </ul> </li> <li>○ 월평균급여증명서류 :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19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: 외항상선, 원양어선, 해외취업상·어선(회사 직인 필)</li> <li>-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 : 내항상선, 연근해어선(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)</li> <li>※ 순직·장해선원,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승무경력증명서(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) : 1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근해어선 부원 :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(해양경찰서 발급)</li> <li>※ 순직·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·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가족관계증명서 : 1부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</li> </ul> </li> <li>○ 재학증명서 : 1부(2021년도 3월 이후 발급분)</li> <li>○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: 1부(2021년도 1학기 발급분)</li> <li>○ 성적증명서 : 1부(직전학기 성적 / 대학생만 해당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신입생의 경우 생략</li> </ul> </li> <li>○ 기타서류(해당자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순직사실확인서류(순직선원만 해당)</li> <li>- 장해등급증명서류(장해선원만 해당)</li> <li>- 기타: 기초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정증명서</li> </ul> </li> </ul>
선발순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순위 : 순직선원 유가족</li> <li>○ 제2순위 : 장해선원 가족</li> <li>○ 제3순위 : 신규 신청 선원가족</li> <li>○ 제4순위 : 20년 이상의 장기 승선 선원가족</li> <li>○ 제5순위 : 다자녀가정의 셋째이상 선원가족</li> <li>○ 제6순위 : 기초수급자 선원가족</li> <li>○ 제7순위 : 차상위계층 선원가족</li> <li>○ 제8순위 : 한부모가정 선원가족</li> <li>○ 제9순위 : 그 밖의 선원가족</li> <li>※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↓, 월평균급여↓, 승선경력↑, 고학년 순으로 선발</li> </ul>
접수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방문 및 우편 접수 (전화: 051-996-3649, 팩스: 051-463-812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산: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)</li> <li>- 포항: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,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)</li> <li>- 제주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, 한림항선원회관 2층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)</li> <li>- 목포: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,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(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)</li> </ul> </li> </ul>